

2027~2028 국가대표 선발전 평가전 운영 세부사항

1. 목적

- 가. 2027~2028 국가대표 선발전 운영시 단일 선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함
- 나. 국제대회 성적, 선수 경기력 변화, 부상, 체급 적합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전 실시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
- 다. 평가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및 재량권 논란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

2. 기본원칙

가. 국가대표 선발 원칙

- 해당 연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1위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다만 국제대회 성적, 경기력 변화, 부상, 체급 적합성 및 쿼터대회 결과 등에 따라 경기력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평가전 실시 가능함
- 평가전은 정기적인 재선발 절차가 아닌 단일 선발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제도로 운영함

나. 적용 대상

- LA올림픽 쿼터대회 출전 체급
 - 국가대표 선발 이후 경기력 재검증 필요성이 발생한 체급
 - 국제대회 성적 및 선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가 평가전 필요성을 인정한 체급

3. 평가전 실시 기준

가. 정량 기준

구분	정량기준	평가전 실시 대상	비고
1	쿼터대회에서 해당 체급 선수가 1승도 거두지 못한 경우	무승 선수의 해당 체급	

나. 정성 기준

정량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평가전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, 경기내용 및 선수의 실제 경기력을 함께 검토하도록 함

1) 검토자료

- 경기력향상위원회 의견
- 국가대표 지도자 의견서
- 해당 경기 영상 및 경기분석 자료

- 필요 시 의무트레이너 또는 의료진 소견

2) 주요 평가항목

- 상대선수의 국제경쟁력 및 WB 랭킹
- 실제 경기내용 및 득실 양상
- 경기 운영 및 전술 수행능력
- 체력 및 후반 경기력
- 체급 적합성 및 체중관리 상태
- 부상 및 컨디션 상태
- 향후 쿼터대회에서의 경쟁 가능성

다. 정량·정성 기준 적용방법

- 정량기준을 **우선 적용**하여 평가전 검토대상 체급을 선정함
- 이후 경기영상, 지도자 의견, 심판 평가 등 정성자료를 종합 검토함
- 최종 평가전 실시 여부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함
- 평가전 실시 또는 제외 결정 시 적용된 정량기준 및 판단근거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함
- 정량·정성평가에 필요한 세부자료는 별지 제1호~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함

4. 평가전 대상자(출전자) 선정

가. 기본 원칙

- 평가전 실시가 결정된 체급에 한하여 도전자 결정전 출전자를 선정함
- 평가전은 현 국가대표의 차기 쿼터대회 출전 적정성을 재검증하는 절차로, 현 국가대표는 도전자 결정전에 참가하지 않고 최종 평가전 대상자로 대기함
- 도전자 결정전은 현 국가대표와 경쟁 가능한 객관적인 경기실적을 보유한 선수를 대상으로 함
- 출전자 선정기준은 평가전 실시 이전에 사전 **확정/공지**하여 특정 선수에게 유·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
- 동일 선수가 둘 이상의 참가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, 해당 자격 발생 대회의 차순위자에게 참가자격을 **부여하지 않음**

나. 도전자 결정전 출전자 선정

구분	출전자 선정기준	비고
	① 협회장배 일반부 우승자 ② 협회장배 대학부 우승자 ③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2위자 ④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	총 3-4명을 원칙으로 도전자 결정전 실시

5. 평가전 운영방법

가. 평가전 운영체계

평가전은 도전자 결정전과 최종 평가전의 2단계 방식으로 운영함

단계	대상	운영내용	결과
1단계	도전자 결정전 출전자	참가선수 간 토너먼트 실시 * 랜덤 대진표 추첨	최종 도전자 1명 결정
2단계	최종선발전 국가대표 1위자 + 도전자 결정전 1위자	최종 평가전 1경기 실시	승자를 2차 쿼터대회 출전자로 확정

나. 도전자 결정전

- 사전에 확정된 출전자 간 경기 실시 후 최종 1위자를 도전자로 선정함
- 참가인원에 따라 랜덤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함
- 경기방식 및 순위결정 기준은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과 동일하게 실시

다. 최종 평가전

- 도전자 결정전 최종 1위자와 현 국가대표 간 최종 평가전 1경기를 실시함
- 최종 평가전 승자를 해당 체급 2차 쿼터대회 출전선수로 확정함
- 현 국가대표가 승리한 경우 기존 **국가대표 및 쿼터대회 출전자격**을 유지함
- 도전자가 승리한 경우 도전자를 **국가대표 및 2차 쿼터대회 출전선수로 교체**함

라. 선수 회복기간

- 도전자 결정전에서 복수의 경기를 실시한 선수와 경기 없이 대기한 현 국가대표 간 체력조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
- 도전자 결정전과 최종 평가전 사이에는 충분한 회복기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구체적인 경기 간격은 선수 안전, 대회일정 및 2차 쿼터대회 엔트리 제출기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함

6. 경기방식 및 경기규정

가. 경기방식

- 도전자 결정전은 참가인원에 따라 토너먼트 운영함

나. 경기규칙

- World Boxing Competition Rules 및 협회 관련 경기규정을 적용함
- 체제, 경기시간, 장비, 경기복 및 판정방식 등은 국가대표 선발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평가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참가선수 및 소속팀과 이해관계가 없는 심판진을 배정하도록 함

다. 대진결정

- 대진은 공개, 랜덤추첨을 원칙으로 함. 추첨결과 및 결과를 기록·관리함(임의배정X)
- 참가인원에 따라 부전승이 발생하는 경우 부전승 배정방법을 사전에 명시함

7. 평가전 결과 및 2차 쿼터대회 출전자 확정

가. 기본원칙

- 평가전 시행 결정 체급은 도전자 결정전 → 최종 평가전의 절차를 거쳐 2차 쿼터대회 출전자를 결정함
- 최종 평가전의 공식 경기결과를 2차 쿼터대회 출전자 결정의 최종 기준으로 적용함
- 최종 평가전 실시 이후 별도의 정성평가만으로 경기결과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
나. 출전자 확정

- 현 국가대표와 도전자 결정전 최종 1위자 간 최종 평가전의 승자를 2차 쿼터대회 출전선수로 확정함
- 최종평가전 승리자가 국가대표 자격 유지/승계 및 2차 쿼터대회에 출전함(국가대표 선수 교체)
- 최종 평가전 결과에 따른 출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2차 쿼터대회 출전자 결정에 한하여 적용함

다. 예외사항

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 재심의 가능함

- ① 최종 평가전 이후 중대한 부상 발생
- ② 도핑 위반
- ③ 징계 또는 선수자격 제한
- ④ 국제대회 참가자격 미충족 / 선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국제대회 출전이 불가능한 경우
- ⑤ 해당 체급 계체 또는 체중관리 불가

※ 위 사유 외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정성적 판단만으로 최종 평가전 결과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
8. 부상·불참 등 예외상황 처리

가. 현 국가대표의 최종 평가전 불참

-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평가전에 불참하는 경우 2차 쿼터대회 출전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이 경우 도전자 결정전 최종 1위자를 2차 쿼터대회 출전자로 확정할 수 있음
-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(2차 상급병원 이상 진단서 등)를 제출하도록 함
- 회복 가능 시점과 2차 쿼터대회 엔트리 제출기한 등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전 연기 여부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함

나. 도전자 결정전 출전자 불참

- 도전자 결정전 대상자가 부상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사전에 정한

차순위자에게 참가자격을 승계하지 않음

-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참가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봄

다. 최종 도전자의 불참

- 도전자 결정전 최종 1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평가전에 불참하는 경우 최종 평가전 참가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봄
-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, 객관적인 증빙자료(2차 상급병원 이상 진단서 등)회 복기간 및 국제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최종 평가전 연기 여부를 심의함
-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현 국가대표의 2차 쿼터대회 출전자격 유지 여부를 심의함

라. 참가자격 중복

- 동일 선수가 둘 이상의 도전자 결정전 참가자격을 충족한 경우 중복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음
-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2위자와 국내대회 우승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선발전 2위 자격을 우선 적용하고 국내대회 출전자격은 해당 대회의 차순위자에게 부여하지 않음

마. 체급 변경

- 도전자 결정전 또는 최종 평가전 대상자가 해당 체급에서 다른 체급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 체급의 참가자격은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국제대회 체급체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심의 가능함

9. 평가전 실시 시기 및 공고

가. 실시 시기

- 1차 쿼터대회 종료 후 정량·정성기준에 따라 평가전 실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
- 도전자 결정전 및 최종 평가전은 2차 쿼터대회 엔트리 제출기한 이전에 종료하도록 함
- 최종 평가전 종료 이후 2차 쿼터대회 출전선수에게 필요한 강화훈련 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정을 편성함
- 전국대회 일정, 선수 체중감량, 부상 및 회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

나. 사전 공고

평가전 실시 확정 시 다음 사항을 사전에 명시함

- ① 평가전 실시 사유 및 적용된 정량·정성기준
- ② 대상 체급
- ③ 도전자 결정전 참가선수 및 선정근거
- ④ 도전자 결정전 경기방식
- ⑤ 최종 평가전 운영방식
- ⑥ 경기일시 및 장소

- ⑦ 계체일정
- ⑧ 대진추첨 및 순위결정 기준
- ⑨ 도전자 결정전과 최종 평가전 간 회복기간
- ⑩ 부상·불참 및 참가자격 중복 처리기준
- ⑪ 최종 평가전 결과에 따른 2차 쿼터대회 출전자 확정방법

10. 평가전 운영 시 주요 원칙

- 가. 평가전은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쿼터대회 결과에 따라 차기 쿼터대회 출전선수의 경기력을 재검증하기 위한 보완절차로 운영함
- 나. 현 국가대표에게 기존 선발전 1위의 지위를 인정하여 도전자 결정전에 다시 참가시키지 않고 최종 도전자와의 직접 평가기회를 부여함
- 다. 동시에 최근 국내대회 및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보인 선수에게 도전기회를 부여함. 이를 통해 기존 국가대표의 선발결과를 존중하면서도 현 시점 경기력이 가장 우수한 선수를 2차 쿼터대회에 출전시킬 수 있도록 함
- 라. 평가전 실시 여부는 사전에 정한 정량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정성평가를 보완적으로 활용함.
- 마. 도전자 결정전 출전자 선정, 최종 평가전 운영 및 결과 적용기준을 사전에 명문화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의 과도한 재량 및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함

11. 평가전 실시 결정 및 행정절차

가. 평가전 실시 결정

- ① 1차 쿼터대회 종료 후 정량기준 충족 여부 확인함
- ② 국가대표 지도자 의견, 심판 평가 및 경기영상 등 정성자료 취합함
- ③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평가전 실시 여부를 심의함
- ④ 평가전 실시 또는 제외 결정의 적용기준 및 판단근거를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함
- ⑤ 평가전 실시 확정 시 도전자 결정전 참가선수 및 해당 소속팀에 통보함
- ⑥ 도전자 결정전 종료 후 최종 도전자 1인을 확정함
- ⑦ 현 국가대표와 최종 도전자 간 최종 평가전을 실시함
- ⑧ 최종 평가전 승자를 2차 쿼터대회 출전선수로 확정함

나. 제출 및 보관자료

- ① 1차 쿼터대회 공식 경기결과
- ② 대진표 및 상대선수 성적
- ③ 상대선수 World Boxing 공식 랭킹
- ④ 상대선수 쿼터 획득 여부
- ⑤ 해당 체급 최종 우승 여부

- ⑥ 국가대표 지도자 의견서
- ⑦ 심판장 또는 상임심판 평가자료
- ⑧ 해당 경기 영상 및 경기분석자료
- ⑨ 도전자 결정전 참가선수 선정근거
- ⑩ 도전자 결정전 경기결과
- ⑪ 최종 평가전 경기결과
- ⑫ 필요 시 의료진 소견 및 진단서
- ⑬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자료 및 회의록

다. 관련 서식

평가전 실시 여부 및 대상 체급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표준서식을 활용함

- ① 별지 제1호 서식 : 국가대표 지도자 의견서
- ② 별지 제2호 서식 : 국제대회 경기리뷰 및 경기력 평가표
- ③ 별지 제3호 서식 : 평가전 실시 정량기준 확인표
- ④ 별지 제4호 서식 : 평가전 실시 검토 종합표

필요 시 부상 및 선수 상태 확인을 위한 의료자료 등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